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최수진 · 강선영
김위상 · 이종배 · 조지연
김장겸 · 박충권 · 김기현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·시행,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·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·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「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」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·감독에 한계가 있고,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비축유의 대여·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·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,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).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비축유의 대여·판매 등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석유(이하 이 조에서 “비축유”라 한다)를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여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
2. 천재지변, 기상 악화, 피격, 해난 등으로 인한 석유 선적의 차질, 석유 정제·저장 시설의 사용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비축유의 대여를 요청한 경우
3. 국제공조에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유의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공급의 감축·중단, 국제 유가의 급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내외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석유비축 의무자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비축유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.

③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된 비축유와 동일한 물량·유종의 석유를 재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종을 변경하여 재구매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비축유의 대여·판매 및 재구매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구매 기간 내에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7조의2(비축유의 대여·판매 등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석유(이하 이 조에서 “비축유”라 한다)를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</u></p> <p><u>2. 천재지변, 기상 악화, 피격, 해난 등으로 인한 석유 선적의 차질, 석유 정제·저장 시설의 사용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</u></p>

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석유
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
자가 비축유의 대여를 요청한
경우

3. 국제공조에 필요한 경우

4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
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
하여 비축유의 대여가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공
급의 감축·중단, 국제 유가의
급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로 인하여 국내외 석유 수
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
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
는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
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·석유
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
게 비축유를 판매하게 할 수
있다.

③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
는 제2항에 따라 비축유를 판
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된 비축
유와 동일한 물량·유종의 석

제4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~ 10. (생략)

유를 재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종을 변경하여 재구매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비축유의 대여·판매 및 재구매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구매 기간 내에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아니한 자

3. ~ 10. (현행과 같음)